탄 원 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및 지명 관련 형사사건

수신: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관련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 귀중 **사건번호:** _____

대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후보자 지명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재임 중 헌법재판관의 임명 및 후보자 지명에 관한 사건에서 개별 행위의 성격과 당시 헌정 상황을 충분히 참작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공정한 인사검증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의 판단이 사후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평가되는 것과 형사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증명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024년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2024년 12월 국회가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하였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특검은 이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백을 장기화할 수 있었다는 비판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 전 총리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포기한 것인지,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인사권의 행사 범위와 정당성에 관해 신중하게 해석한 것인지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 권한대행 교체와 재복귀, 국회 내 극심한 대립이 연속된 상황은 의사결정의 배경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헌법상 의무 위반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더라도, 직무유기죄의 고의와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이 당시에 처했던 법적·제도적 제약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한 전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4헌나9). 당시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 1명은 인용 의견,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 4명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위헌·위법으로 보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기각 의견은 즉시 임명할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의 기각이 곧 형사상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의 헌법적 의무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이처럼 나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인식과 직무유기의 고의가 어느 범위에서 입증되는지를 더욱 신중히 검토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임명 보류와 실제 임명 경위의 구분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 이후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초기 임명 보류 결정과 이후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와 판단의 변화를 차례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조치가 이미 있었던 잘못을 없애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헌법기관을 영구히 마비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였는지 또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판단의 변경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4. 2025년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특검은 인사 검증이 불충분했고 관계 공직자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전문성·공정성과 검증의 충실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다만 지명권 행사와 검증 절차 진행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고유한 법적 요건을 갖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어느 범위의 지명 재량이 있었는지, 당시 인사검증 관련 규정과 관행은 무엇인지, 후보자에 관한 자료와 검토가 어느 정도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다른 공무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강요했는지를 입증 자료에 따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검증 기간만으로 고의적 권한 남용이나 직무 방해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정치적 판단의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

국정 운영 과정의 인사 판단은 국민과 국회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형사처벌은 법률이 정한 범죄 요건이 증거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행한 결정이 상당한 비판을 받더라도, 그 결정의 부적절함·위헌 가능성과 별개로 고의, 권한 남용의 구체적인 방법,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라는 법적 결과를 각각 확인해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6. 개인적·사회적 사정과 관대한 판단의 요청

한 전 총리는 여러 정부에서 장기간 공직을 수행하면서 경제·통상·행정 분야의 책임을 맡아 왔습니다. 그의 경력이 특정 결정을 적법하게 만들거나 국민의 비판을 막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국가를 위해 일한 세월, 고령이라는 사정, 당시 초유의 헌정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했던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최종 탄원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탄원을 통해 특정 정치적 견해를 재판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 전 총리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였는지를 가장 엄격한 증명 기준과 분명한 구성요건에 비추어 판단해 주시고,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행위의 실제 내용과 책임 정도에 맞는 비례적인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에게 참작 가능한 정황을 충분히 헤아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관대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